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중국, 막걸리·김치의 식품위생기준 개정 추진
2012년 상반기 불법종자 유통 적발·조치 결과

거시경제 동향

2012년 5월 소비자동향지수

기획 정보

미국의 가족농 정의와 대안적 접근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농작물 품종보호 출원 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주요 농정 이슈_1

중국, 막걸리·김치의 식품위생기준 개정 추진

※ 본 자료는 5월 21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막걸리·김치 중국 수출 장애요인 제거된다」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주요 논의 사항

- **한·중 정상회담(5.13~14일)에서** 우리 측은 “막걸리·김치 등 **발효식품 관련 한·중 수출 검역기준**이 달라서 **협이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중국 측의 개선 요청
 - ※ (막걸리) 중국은 발효주에 대해 세균 수 규격(50 cfu 이하/ml)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생막걸리 수출이 어려움.
 - ※ (김치) 중국은 발효식품인 김치에 대해 살균 절임채소(파오차이) 위생기준(100g 당 대장균군 30MPN이하)을 적용하여 김치수출이 어려움.
 - 2011년도 김치 한·중 교역 규모: (수출) 235천 불, (수입) 120,874천 불
 -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양측이 함께 합의를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긍정적으로 답변**
 - 지난 5.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 협의회에서 중국 측은 막걸리·김치의 중국내 위생기준에 대해 개정을 진행중이라고 밝힘.
- ### □ 양우 계획
- 막걸리의 경우, 우리정부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발효주 국가표준’개정안을 이르면 6월경에 공포·시행할 예정
 - ※ (중국 측 개정안) 세균 수 규격은 삭제하고, 식중독균으로만 관리
 - 김치의 경우 한국 측 요청사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중국내 절임채소 전반에 대한 기준을 개정 중

주요 농정 이슈_2

2012년 상반기 불법종자 유통 적발조치 결과

※ 본 자료는 5월 22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2012년 상반기 불법종자 유통 38개 업체 적발조치」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3월 12일 ~ 5월 15일
- 조사 대상: 종자업 등록업체 및 종자판매상 6,100여 업체 중 533개 업체

□ 주요 내용

-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도 상반기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38개 업체를 적발하여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그 외 업체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권고 조치(11년 30개 업체 대비 27% 증가)
 - 무보증 17건,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2건, 보증관련 검사서류 미보관 2건, 품질 미표시 3건, 가격 미표시 14건

< 2012년 종자 유통조사 실적 (5. 15 현재) >

품 목	조사기간	시·도 (시·군)	조사 업체수	조 치 내 용					
				무보증	생판 미신고	검사 서류 미보관	품질 미표시	발아보 증경과	가격 미표시
과 수 묘목	3. 12 ~ 4. 24	8개 시·도 (33개 시·군)	167	-	2	-	3	-	4
씨 감 자	3. 12 ~ 4. 20	10개 시·도 (29개 시·군)	68	14	-	2	-	-	8
봄파종 종자	3. 12 ~ 5. 15	11개 시·도 (42개 시·군)	298	3	-	-	-	-	2
계			533	17	2	2	3	-	14

□ 주요 위반 사례

- **(씨감자)** 생산과정 및 수확 후 출하 전에 검사를 받아 합격된 보증 종자에 한하여 유통시켜야 하나 보증을 받지 않고 유통시킨 14개 업체에 대해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고발 조치
 - 종자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종자업 등록업체 2곳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 **(과수묘목)** 생산·수입판매 시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묘목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2개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
 - 품질 표시를 하지 않은 1개 업체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며,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4개 업체는 시정 권고 조치
- **(옥수수 등 봄파종 종자)** 보증을 받지 않고 유통시킨 3개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하였고,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
 - ※ 무보증 종자판매,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보증관련 검사서류 미보관, 품질미표시: (1회 위반) 100만 원
 - ※ 가격 미표시: (1회 위반) 경고조치

거시경제 동향

2012년 5월 소비자동향지수

※ 본 자료는 5월 25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2년 5월 소비자동향지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소비자심리지수

-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5월에 105로 전월대비 1p 상승

< 구성지수의 기여도 >

구 분	'11.9월	10월	11월	12월	'12.1월	2월	3월	4월	5월
소비자심리지수 ¹⁾	99	100	103	99	98	100	101	104	105
(전기 대비 지수차) ²⁾	0.0	0.8	2.7	△3.4	△1.1	2.5	0.2	3.2	1.2
구 성	현재생활형편	△0.5	0.5	0.2	△0.3	△0.3	0.5	△0.3	0.5
지수의	생활형편전망	0.0	0.2	0.6	△0.7	△0.2	0.7	0.0	0.6
기여도	가계수입전망	0.3	0.0	0.5	△0.8	0.0	0.3	0.2	0.5
(p)	소비지출전망	0.4	0.0	0.2	△0.5	△0.2	0.5	0.0	△0.2
	현재경기판단	△0.3	0.1	0.6	△0.5	△0.2	0.2	0.1	0.5
	향후경기전망	0.1	0.0	0.6	△0.6	△0.2	0.3	0.2	0.6

주: 1) 소비자심리지수는 개별지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합성하여 산출
2) 전기와 지수 차이를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시

□ 가계의 소비심리

- **현재생활형편CSI**와 **생활형편CSI**는 전월대비 각각 3p, 2p 상승
- **가계수입전망CSI**는 99로 전월과 동일, **소비지출전망CSI**는 109로 전월대비 1p 하락

< 생활형편, 가계수입 및 소비지출전망CSI 추이 >

구 분	'11.9월	10월	11월	12월	'12.1월	2월	3월	4월(A)	5월(B)	(B-A)
현재생활형편CSI	83	86	87	85	83	86	84	87	90	(+3)
생활형편전망CSI	91	92	95	91	90	94	94	97	99	(+2)
가계수입전망CSI	96	96	98	95	95	96	97	99	99	(-)
소비지출전망CSI	108	108	109	107	106	108	108	110	109	(△1)

1) 소비자태도지수(CSI: Consumer Sentiment Index): 장래의 소비지출 계획이나 경기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지수로 환산해 나타낸 지표

□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현재경기판단CSI**와 **향후경기전망CSI**는 각각 전월 대비 4p, 3p 상승
- **취업기회전망CSI**는 94로 전월대비 2p 상승
- **물가수준전망CSI**와 **금리수준전망CSI**는 각각 137과 115로 전월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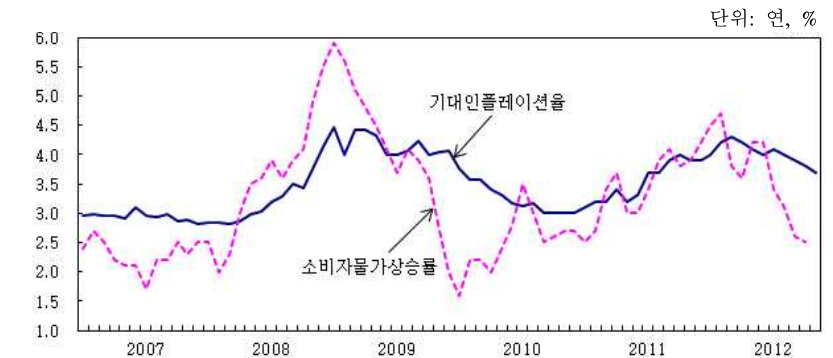
< 경기, 취업기회, 물가 및 금리수준전망CSI 추이 >

구 분	'11.9월	10월	11월	12월	'12.1월	2월	3월	4월(A)	5월(B)	(B-A)
현재경기판단CSI	64	66	75	68	65	68	70	77	81	(+4)
향후경기전망CSI	78	78	86	78	76	80	82	90	93	(+3)
취업기회전망CSI	96	90	91	82	83	88	90	92	94	(+2)
물가수준전망CSI	144	145	140	146	144	142	141	137	137	(-)
금리수준전망CSI	126	123	119	118	117	115	116	115	115	(-)

□ 기대인플레이션

-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연평균 3.7%로 전월대비 0.1%p 하락
- 구간별로는 **향후 물가가 2.0~3.5% 범위에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소비자 비중**이 28.6%로 **지난달에 비해 3.1%p** 증가한 반면 **3.5%를 초과하며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소비자 비중**은 66.7%로 **3.1%p** 감소

< 기대인플레이션율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기획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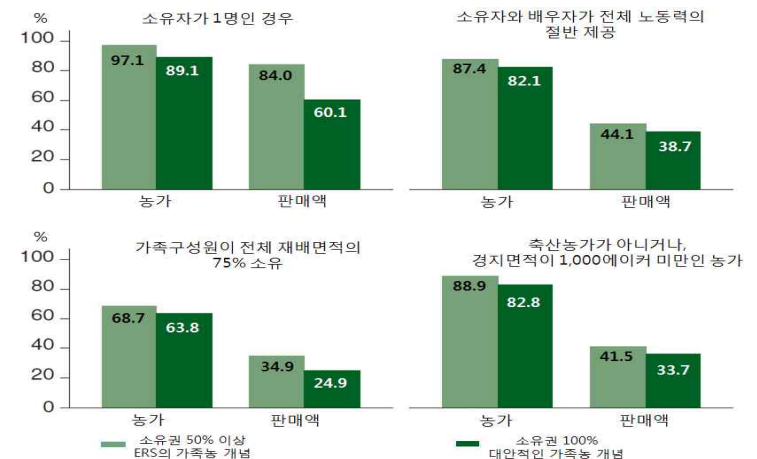
미국의 가족농 정의와 대안적 접근

※ 본 자료는 "Exploring Alternative Definitions—Implications for Agricultural Statistics and Program Eligibility, USDA, 2009"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ERS의 가족농 개념과 대안적 개념

- 1980년대 초반 이후, **농가의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음. 농가 경영이 점차 세분화·전문화되면서 고용 인력의 증가, 토지 및 시설 임대 증가 등이 수반됨. **최근에는 대규모 농업경영체가 가족농으로 빠르게 대체**되는 추세임.
- **미국 농업지원청(FSA: Farm Service Agency)**은 "the Direct Operating Loans", "Direct Ownership Loans", "Emergency Farm"과 같은 **가족농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ERS에 따르면, 미국 대부분의 농산물은 가족농을 통해 생산될 정도로 미국 농업에 있어 가족농은 매우 중요한 경영체임.
- 가족농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공식적인 개념이 없어** 농업관련 업계, 학계, 연구기관에서는 **가족농의 정의를 상이하게 사용**함.
 - 일각에서는 가족농이 소규모이고, 제한된 농업생산을 하는 주체로 간주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농이 비가족관계로 구성된 대규모 농업경영체로 규정함.
- **ERS에 따르면, 가족농은 혈연, 결혼, 입양에 의한 개인 또는 경영자가 농업경영체 자산의 50% 이상을 소유한 농가로 정의**함.
 - ※ 가족농은 미국 전체 농가의 97%를 차지함. 이 중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25만 달러 이상인 농가는 92%를 차지하며, 이들 농가의 농산물 판매액은 미국 전체 농산물 판매액의 84%를 차지함.
 - **ERS의 가족농 정의는 농가의 적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 즉, 소유권과 경영권은 분리가 가능하며, 경영체가 비가족인과의 동업, 기업(법인)의 형태여도 가족의 소유권이 50% 이상이면 가족농으로 인정됨.

- 한편, **ARMS(Agri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urvey)**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가족의 소유권이 100%인 농가를 가족농으로 인정**하는 대안적인 가족농의 정의를 적용함.
- ERS의 가족농 정의와 ARMS의 대안적인 가족농 정의를 적용할 때, 소유권, 노동력 투입, 토지 소유 비중, 경지 규모에 따라 가족농과 비가족농의 비중이 어떻게 변하는지 예측함.
 - 예컨대, 농업경영체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ERS와 ARMS의 가족농의 비중은 각각 97.1%, 89.1%로 나타남. 이 가족농의 농산물 판매액이 미국 전체 농산물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ERS 84.0%, ARMS 60.1%임.
 - 즉, **ARMS(대안적인 가족농 개념)를 적용할 경우, 가족농 비중은 ERS보다 8.0%p 낮아졌고, 판매액 비중은 무려 23.9%p 감소**함.
 - 그 밖에 노동력 투입(50% 제공), 토지 소유 비중(전체 면적의 75% 소유), 경지 규모(1,000에이커 미만) 기준에 있어서도 **ARMS(대안적인 가족농 개념)의 가족농 개념이 ERS의 가족농 개념보다 전체 농가(판매액)에서 가족농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게** 나타남.
 - 하지만 **대안적인 가족농 개념도 농가의 적용 범위가 여전히 광범위**하여 **비가족농을 정확히 분류하는데 한계**가 있음.



□ “활동적인 참여(actively engaged) 수준에 따른 가족농의 비중 변화

- 이 부분에서는 농업생산에 대한 가족농의 “활동적인 참여(actively engaged)” 수준을 파악하고자 함. 자격 기준은 **농가 판매액, 전체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농외소득을 적용**함.
- **농가 소득 중 농업 소득이 50% 이상을 차지**할 경우, 가족농 중 **부적격 농가 비중은 82~87%**이며, 부적격 가족 농가의 판매액 비중은 30~40%를 차지함.
-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만 달러 이상**이면, 가족농 중 **부적격 농가 비중은 58~70%**, 부적격 가족 농가의 판매액 비중은 4% 미만임.
- **연간 농외소득이 1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가족농 중 부적격 농가 비중은 18~20%**, 부적격 가족 농가의 판매액 비중은 10~15%임.

< 가족농 자격 기준에 따른 부적격 농가 비중 >

자격 기준	가족농 중 부적격 농가 비중	부적격 가족 농가의 판매액 비중
농가 소득 중 농업 소득이 50% 차지	82~87%	30~40%
연간 농산물 판매액 1만 달러	58~70%	<4%
연간 농외소득이 1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18~20%	10~15%

주: 가족농의 부적격 농가 및 부적격 가족 농가의 판매액 비중은 노동, 토지, 소유권, 농가 규모의 제약 조건을 포괄하는 수치임.

- 요약하면, ERS의 가족농 개념을 적용할 경우, 대부분의 농가는 가족농으로 분류됨. 그러나 가족농 기준을 “활동적인 참여(actively engaged) 수준”에 근거하여 적용할 경우, 연방정부 보조금 지원에 대한 자격이 부여되는 가족농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5월 21일~25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계속된 이상기온…근채류 몸살

- **저온현상, 돌풍 등 기상이변으로 고구마, 감자, 당근 등 근채류 작황 부진.** 특히 **감자, 고구마는 지난해 저장물량이 20%가량 감소, 햇수확량도 충분하지 않아 가격상승세. 감자**…지난해 씨감자 가격 상승과 겨울 한파 등으로 재배면적 7%가량 감소, 경남 밀양 등 일부지역 돌풍 피해로 감자의 시장 반입량 크게 감소, 제주 노지 봄감자 역시 이상기온으로 인한 작황 부진에 예년보다 보름가량 출하가 지연되어 5월 중순 수미감자 20kg 상품 평균가격은 6만원 내외 기록하며 **평년보다 2배가량의 높은 시세** 형성. **고구마**…겨울 한파와 4월 저온현상 등의 피해로 출하량 감소, 2011년산 고구마 물량이 평년보다 20% 감소한 관계로 올 봄 저장물량은 예년에 비해 빨리 소진되어 5월 중순경 고구마 10kg 상품 가격이 4만 원 후반대를 형성하면서 **평년보다 약 1.5배 높은 강세**

자료: 한국농어민신문(2012.5.24).

□ 우리나라 식품수입량 증가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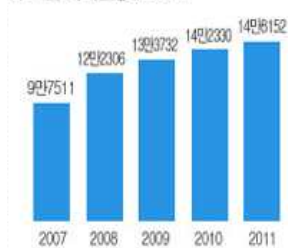
- **국립환경과학원**, 5.16일 우리나라와 일본, 영국, 프랑스 등 4개국을 대상으로 **2010년 기준 각국의 식품수입에 의한 푸드 마일리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결과 발표.** 우리나라의 1인당 식품 수입량은 **468kg/인**으로 **영국·프랑스·일본 중 1위**, 1인당 푸드 마일리지도 **7085t·km/인**으로 조사대상국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프랑스와는 10배 정도 차이** 발생한 반면 일본과 영국, 프랑스는 2003년 이후 감소 추세. **식품 수입에 따른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역시 142kgCO2/인**으로 **가장 높음.** 이와 같이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먹을거리 중 **수입산 농식품 비중 증가로 녹색식생활교육 실천 등의 개선이 요구**

자료: 한국농어민신문(2012.5.24).

□ 가락시장 친환경농산물 유통물량 상승곡선

-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가락시장 청과류 전체 거래물량이 정체된 가운데 **친환경농산물 거래물량 지난해이 14만 8152톤…최근 5년간 성장률 52%**로 가락시장의 친환경농산물 유통물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연도별 거래물량은 꾸준히 성장세<그래프 참조>. 친환경 중도매인에게 중도매인 평가 시 친환경농산물 거래실적은 일반 농산물 거래

연도별 거래물량 (단위:톤)



보다 가중치 부여, 중도매인 점포에는 친환경농산물 취급을 알리는 간판 부착,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전문 취급 중도매인 홍보로 영업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혜택 부여

자료: 한국농어민신문(2012.5.21).

□ '농가소득안정직불제' 대폭 손볼 듯

- 농가소득안정직불제 도입을 위해 쌀직불제와 발농업직불제 등을 한데 묶을 경우 한정된 재정여건상 쌀직불제의 지원이 현행 방식보다 약화될 우려가 있어 **'농가소득안정직불제'를 최근 대폭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 중. 지난해 고추·마늘 등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발농업직불제 도입, 쌀직불제가 농가소득안정직불제로 편입될 경우 파생될 문제 등으로 인해 **쌀 고정직불과 발직불제에 미국이나 캐나다의 수입보험* 추가 검토**. 이 경우 **기존 직불제 틀을 유지하면서 수입보험으로 소득 안정 기능 보장** 가능, **농가의 일정 수준 자부담으로 '일방적인 지원'이라는 지적에서도 합리적인 대안**

※ 농가소득안정직불제: 당해연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을 때 그 일부를 보조금으로 메워 주는 선진국형 직불제의 하나

※ 수입보험: 기준소득보다 수입이 낮으면 정부와 농가가 공동으로 적립한 기금 중 일부를 농가에 지급하는 제도

자료: 농민신문(2012.5.21).

□ 지자체, 농어촌뉴타운 재정부담 '어리 원다'

- **정부 지원으로 장성과 화순에 조성된 농어촌뉴타운 90% 이상 분양률** 기록.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정부지원금 감소로 지자체 과도한 재정부담, 입주자 농지매입 어려움**을 겪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 산적. **화순**…총 489억9,700만 원의 예산 가운데 국비보조금 128억1,400만 원, 대출형태로 조달해 주는 기금융자금 125억6,000만 원과 군비 236억 2,300만 원은 지자체의 몫으로 **총 사업비의 75%를 부담하면서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 **장성**…4년여에 걸친 공사 진행하면서 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체 공사비 약 20% 상승했지만 지자체가 전담**, 일부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들은 **농작물을 경작할 농지를 구입하지 못해** 농지구입에 나서면서 **뉴타운 주변 농지가격이 2배 이상 상승**

자료: 한국농어민신문(2012.5.24).

□ 농업조세, 농업발전 지원 체계로 개편돼야

- 농경연(KREI) 김미복 부연구위원, **'농업부문 조세체계와 개선과제'** 연구에서 **우리나라 농업조세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25개 전체 세목 대부분 농업분야의 면세 및 감면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체계 속에서 세원이 누락되는 불평등한 과세체계**라는 평가, **면세 및 감면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는 행정비용 증가**로 분석. **농업부문 조세체계의 개편방향**은 ①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과세하고 과세 후 공제, 분리과세를 통해 소규모 농어가들의 현재 조세 지원 유지, ② 과세 후 간소화된 제도를 통해 환급 활성화, ③ 농업 관련 생산 및 경제활동을 제도의 틀 안 산업으로 포섭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EITC* 등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의 실효성 향상 필요. 또한 **농업소득세 폐지가 거시적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사실을 밝히고,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재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효과 분석. 농업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는 시나리오에서 농가의 평균 납부세액은 약 44만 원으로 나타나 **농업소득세가 재도입된다 하더라도 농가의 부담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

※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정부에서 일정한 수준까지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 가령 소득 보전 수준을 150만 원으로 설정했을 경우 100만 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50만 원을 보전. 미국(1975년~)이 시행 중인 '마이너스 소득공제'(ETC / Earned Income Tax Credit)를 본뜬 것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노동에 참여했을 때만 자금을 지원해 노동 동기를 유발한다는 점이 특징

자료: 원예산업신문(2012.5.23).

연구 지원 정보

농작물 품종보호 출원 현황

※ 본 자료는 5월 22일 농수산식품부의 「농작물 품종보호 출원」 관련 보도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연도별 출원 연왕

○ 우리나라가 식물신품종보호제도 운영 15년 만에 누적 **출원 건수 6,000건**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음.

- 5.20일 현재, **출원 5,973품종, 등록 3,955품종**으로 **증가추세** 지속

※ 등록 현황: ('00) 233 → ('05) 311 → ('11) 448, 연평균 6.8% 증가

※ 출원 현황: ('00) 94 → ('05) 533 → ('11) 587, 연평균 20.1% 증가

□ 부류별 출원 연왕

○ 지금까지 출원내역을 작물별로 보면 장미·국화 등 **화훼류**가 3,243품종으로 **56%를 차지해 가장 많고**, 이어 채소류(1,111품종, 19%), 식량작물(866품종, 15%), 과수류(364품종, 6%) 등의 순임.

○ 출원 주체별로는 **민간 종자업체**가 2,506(**42%**)품종으로 가장 많으며, 국가기관(1,648품종), 지자체(860품종), 민간육종가(796품종)의 순임.

○ 이 중에는 **외국 출원품종**이 1,447품종에 달해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연도별 점유율은 하향추세**임.

- 연도별 외국품종 출원 추이: ('02) 57% → ('06) 24% → ('11) 12%

○ 최근 5개년('06~'10) 누계 기준으로 품종보호 출원건수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가 중 8위**(2,559품종)를 차지하여 이미 육종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고 있음.

- 세계 품종보호 출원순위('06~'10 누계): (1위) EU, (2위) 미국, (3위) 일본

※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 한편, 2012.1.7일을 기해 딸기, 감귤, 나무딸기,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 등 6개 작물이 품종보호 대상에 추가로 지정되어 **우리나라는 모든 식물 종(種)에 대하여 출원**이 가능한 국가가 됨.
- **품종보호제도**는 우수한 국산품종 개발을 촉진하고, 민간육종을 활성화 하는 등 **종자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음.

< 국내 품종보호 출원(유형별·작물군별) 현황 >

출원 작물	국 내						외 국				계						
	계	개인	종자 업계	지 자 채	국가 기관	기타	계	개인	종자 업계	기타	계	개인	종자 업계	지 자 채	국가 기관	기타	
화훼류	1,860	481	194	595	563	27	1,383	63	1,320	-	3,243	544	1,514	595	563	27	
채소류	1,099	40	811	77	130	41	12	-	12	-	1,111	40	823	77	130	41	
식량작물	862	39	45	71	638	69	4	1	3	-	866	40	48	71	638	69	
과수류	321	123	34	42	115	7	43	6	35	2	364	129	69	42	115	9	
특용작물	232	11	35	29	145	12	1	-	1	-	233	11	36	29	145	12	
버섯류	114	24	14	45	26	5	3	2	1	-	117	26	15	45	26	5	
사료작물	38	6	-	1	31	-	1	-	1	-	39	6	1	1	31	-	
계	출원	4,526	724	1,133	860	1,648	161	1,447	72	1,373	2	5,973	796	2,506	860	1,648	163
	등록	2,902						1,053				3,955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